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1996. 1.31. 규칙 제180호
개정 1996. 7.10. 규칙 제194호
개정 1998. 6. 3. 규칙 제232호
개정 1999. 5. 6. 규칙 제265호
개정 2002. 7.11. 규칙 제332호
개정 2003. 2. 7. 규칙 제345호
개정 2004. 2.25. 규칙 제372호
개정 2005. 2.16. 규칙 제396호
개정 2007. 1. 5. 규칙 제436호
개정 2008. 7.15. 규칙 제486호
개정 2009. 4. 3. 규칙 제531호
개정 2011. 9.21. 규칙 제607호
개정 2014.11.10. 규칙 제718호
개정 2017. 3.21. 규칙 제785호
개정 2017.12.28. 규칙 제808호
개정 2018.06.27. 규칙 제830호
개정 2020.06.26. 규칙 제932호
개정 2021.08.24. 규칙 제971호
개정 2022.12.06. 규칙 제10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공정안전 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심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1.5.>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 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정안전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4.3.>

1. 3급 이상 직원(3급대우 직원 포함)
2. 심사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 7년) 이상
4. 석사학위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박사 2년) 이상
5. 학사학위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②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4.3.>

③ 삭제<2007.1.5.>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2021.08.24.>

②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04.2.25.>

④ 이사장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22.12.06.>

1. 심사위원이 보고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와 결탁하여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0., 2021.08.24.>

1. 해당분야의 심사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검토서 작성

② 심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심사책임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0., 2020.06.26., 2021.08.24.>

1.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보고서 세부내용과 심사규정 제3장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 및 그 첨부서류 검토 총괄

2. 심사회의 개최 시 주관

3. 심사회의 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작성 총괄

4. 심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구분,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적정

내용 기재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정 사유서 작성 등 심사결과
판정의 총괄

5.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

제3장 심사

제7조(심사실시기관) ① 보고서의 심사는 화학사고예방센터(이하 “심사실
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14.11.10., 2017.3.21.,
2020.06.26.>

② 심사실시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지역 소재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사업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8조(보고서의 접수) ① 보고서는 각 심사실시기관에서 접수한다.<개정
2014.11.10.>

② 사업주가 보고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서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1.5.>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은 그 보고서가 소관
사항이 아니면 이를 즉시 소관 심사실시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제9조(심사반의 구성)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반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② <삭제 2018.06.26.>

제9조의2(심사위원의 제척·회피) ① 이사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사 안건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고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서 제척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규정 제4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검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2021.08.24., 2022.12.06.>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로 제1항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규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1.10., 개정 2022.12.06.>

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심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조문이동, 2020.06.26.>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공동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을 허가하는 관청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⑤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06.26.>

⑥ 심사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심사결과 구분별로 보고(통지)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1의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신설 2020.06.26.>

제4장 확인

제12조(확인 실시 등) ① 확인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시행규칙 제53조 및 심사규정 제16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2020.06.26.>

② 제13조에 따라 자체감사결과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은 심사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1.5., 2017.3.21.>

제13조(확인요청서 등 접수) ① 확인요청서 또는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결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심사실시기관에서 접수한다.<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서 또는 자체감사결과를 접수한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일정을 정하여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9.4.3.,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14조 삭제<2002.7.11.>

제15조(확인 절차 등)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확인반 또는 자체감사결과 검토반을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 또는 검토반에는 확인대상 사업장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명 이상 가급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③ 확인반원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합,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6.>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결과 또는 자체감사결과의 검토결과를 심사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구분별로 보고(통지)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1의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개정 2009.4.3., 2017.3.21., 2020.06.26.>

⑤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17.12.28.>

⑥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자가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확인요청기간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의 확인처리기간은 심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서에 기록된 요청기간의 최종일이나 요청일로부터 7일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4.3., 2017.12.28.>

제5장 보칙

제16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추가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 확인 대상 설비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부도인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제17조(보고사항) ① 삭제<2007.1.5.>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추가명단을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2020.06.26.>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제18조(비밀준수)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3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서 내용의 비밀보장을 요구 받으면 요구받은 부분의 서류를 별도의 서류함에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관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3급 이상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제18조의2(영리행위 금지) 공단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4.3.>

제19조(수수료의 수납)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주에게 심사규정 제59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를 심사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3.>

②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수입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단ERP에서 전산으로 실적을 입력하는 사업은 전산으로 실적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납부한 심사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수수료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소속기관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출납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20조(수당 및 여비)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심사규정 제7조제3항 및 공단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회의를 및 확인에 참여한 외부심사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20.06.26.>

부칙<제180호, 1996.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는 심사규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기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노동부 고시 제1994-33호)를 기준으로 수납하고 심사규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수료에 의거 정산한다.

부칙<제194호, 199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5호, 1999.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2호, 200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5호, 20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제372호, 200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96호, 200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6호, 2007.1.5.>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6호, 2008.7.15.>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9.4.3.>

이 규칙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7호, 2011.9.21.>

이 규칙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8호,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5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8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2018.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2호, 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71호, 202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1호, 2022.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개정 2022.08.24., 2022.12.06.>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

(제11조 및 제15조 관련)

1. 심사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대 상
적 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2.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주
	3. <삭 제>	
	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소방서장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시설 허가관청 (관할 시·도지사장)
조건부 적 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2.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주
	3. 조건부 적정 내용 기재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4. <삭 제>	
	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소방서장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시설 허가관청 (관할 시·도지사장)
	8.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별지 제12호서식)	사업주
부적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업주
	2.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주
	3.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조치요청서 (심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고용노동관서장
	4. 부적정 사유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5. <삭 제>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7.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별지 제12호서식)	사업주

2. 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대 상
적 합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조건부 적 합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 확인결과 조치요청서 (심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3. 조건부 적합 내용 기재서(지침 별지 제3호서식) 4.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지침 별지 제1호서식) 5.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별지 제12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부적합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 통지서 (심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 확인결과 조치요청서 (심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3. 부적합사유서(지침 별지 제4호서식) 4.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지침 별지 제1호서식) 5.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별지 제12호서식)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사업주

제 00-00 호

위 촉 장

성 명 : ○ ○ ○

위촉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제2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심 사 검 토 서					
접수번호 : 제 호					
		년 월 일			
		책임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업 장 정 보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 합 의 건					
심사항목		안전·보건기준		심 사 결 과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접수번호 : 제 호		년 월 일	
		책임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장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번 호	보 완 내 용		비 고

조건부 적정 내용 기재서 년 월 일 책임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접 수 번 호	제 호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종 합 의 견		
심사항목	조 건 부 내 용	심사기준(관계법규 등)

[별지 제5호서식] 부적정사유서<개정 2007.1.5., 2017.12.28., 2020.06.26.>

부 적 정 사 유 서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제 호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종 합 의 견		
심사항목	부 적 정 사 유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 <개정 2017.3.21., 개정 2017.12.28., 2020.06.26., [2022.12.0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서**

사 업 장 명				
심사대상사업 또는 설비명		(기존, 설치·이전, 변경)		
심 사 일 자				
심사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책임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외부기관			
입회반	입 회 자			
	입 회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 일반사항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사업개요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18조		

II. 공정안전자료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자료 가. 유해·위험물질 목록 ①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의 물성 요약 및 내용의 적정 여부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 취급량은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기록 여부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물질별 MSDS의 작성 및 위험특성 내용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19조, 제20조 및 제41조 법 제11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19조, 제20조 및 제41조		
2.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가. 동력기계목록 ① 동력기계의 번호 및 명칭은 P&ID와 일치하며 누락된 Item은 없는지의 여부 ② 필요한 명세 및 방호장치의 적정여부 ③ 재질 선정(재질 분류기호) 적정여부 나. 장치 및 설비 명세 ① 장치의 번호 및 명칭은 P&ID와 일치하며 누락된 Item은 없는지의 여부 ② 용량 등 주요 명세의 적정여부 ③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의 적정여부 ④ 재질선정(재질분류기호)의 적정여부 ⑤ 재질이 사용온도의 적정여부 ⑥ 용접효율, 비파괴검사율, 부식여유, 열처리 및 사용두께 등의 적정여부 다. 배관 및 개스킷 명세 ① 재질 및 플랜지 선정의 적정 여부 ② 재질의 사용온도 적정여부 ③ Gasket 선정의 적정여부 라. 안전밸브 및 과열판 명세 ① P&ID와 일치 및 Item의 누락 여부 ② 배출용량, Size 및 재질선정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1조 및 제4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1조 및 제4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1조 및 제41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부터 제26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1조 및 제41조		

[illegible]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7.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장구 설치 계획 ① 세척·세안시설의 설치 계획서 및 배치도 및 동과 방지 계획의 적정 여부 ② 안전보호장비의 배치계획서 및 배치도의 적정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3조 및 제41조		
8.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여부 및 제어풍속 등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3조 및 제41조		
9.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 ①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 여부 ② 방폭전기/제장기계·기구 선정의 적정여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내지 31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4조 및 제41조		
10. 전기단선도 ①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의 적정여부 ②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이 적정한 지의 여부 ③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의 적정 여부 ④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0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4조 및 제41조		
11. 접지계획 가. 접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 나. 접지배치도 내용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32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4조 및 제41조		
12. 장치 및 설비의 설계·제작·설치 기준·설계 명세가 국내·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5조 및 제41조		
13. 기타 관련자료 가. 플레어스택 ① 플레어스택의 용량, 높이 및 안전거리의 적정여부 ② 플레어 헤더에 음압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여부 ③ 녹아웃 드럼, 실 드럼의 적정 설치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물질수지, 처리방법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26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6조 및 제41조 안전보건규칙 제26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6조 및 제41조		
14. 기술자료, 도면 등의 up-date 도면,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공정 안전자료가 변경시에 보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41조		

Ⅲ. 공정위험성평가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9조		
2. 공정위험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가.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나. 위험이 있다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다. 사고발생시 피해크기에 대한 검토 라. 잠재적 위험제거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실행 일정계획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제28조 및 제42조		
3.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및 제43조		
4. 평가팀에 최소한 공정설계전문가·공정운전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및 제43조		
5. 과거의 공정사고, 중대산업사고, 고장사고 및 중대재해의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및 제43조		
6. 위험등급에 대한 기준 및 적용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및 제43조		
7.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목 내용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개선계획의 구체적 내용 나. 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 조치 책임부서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및 제43조		
8.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나.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8조 및 제43조		
9. 공정위험성평가 주기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43조		
10. 공정위험성 평가 외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7조		

IV. 안전운전계획

IV-1. 안전운전지침과 절차(확인 시 심사 가능)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심사대상 공정·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해 안전운전지침·절차를 작성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1조 및 제44조		
2. 운전절차가 공정한기술자료, 도면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1조 및 제44조		
3. 운전절차에는 운전단계별로 운전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최초의 시운전 나. 정상운전 다. 비상시 운전 라. 정상적인 운전정지 마. 비상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	고용노동부고시 제31조 및 제44조		
4. 운전절차에는 운전범위를 벗어날 경우의 조치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예상되는 결과 나.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 및 절차 또는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고시 제31조 및 제44조		
5. 운전절차에는 다음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나. 위험물질 누출예방 조치 다.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라.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마.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31조 및 제44조		

IV-2. 설비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위험설비의 안전성확보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를 작성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2조 및 제45조		
2.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2조 및 제45조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가. 위험설비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계통 설비 ② 배관계통설비 ③ 압력방출계통설비 ④ 비상정지계통설비 ⑤ 전기 및 계측제어 계통설비 ⑥ 회전기계류 나. “가”항의 위험설비들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검사 및 시험 등 점검주기를 달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 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라. 점검 및 보수시 공정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지의 여부 마. 정비후 변경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바. 예비품 목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여부 사. 장비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여부			

IV-3.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등 위험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절차서의 작성 및 다음 사항의 포함 여부 가. 안전작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의 종류 나. 허가기준, 절차 및 해당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다. 안전작업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라. 안전작업허가권자 2. 안전작업 시작전에 작업내용을 당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3조 및 제4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33조 및 제46조		

IV-4. 도급업체 안전관리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도급업체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다음 사항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사업주의 의무 나.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공구의 공급 라. 적합한 작업절차서의 공급 및 교육 마. 작업상 유해·위험물질 취급교육 및 비상조치계획 바. 안전작업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사 응급조치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락망 아.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절차 자 협력업체 작업자의 교육과 자격심사에 관한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34조 및 제47조		

IV-5.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은 작성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의 기술 및 적정 여부 가. 교육 대상별 교육 종류 나. 교육 계획의 수립 다. 교육 실시 시기와 방법 라. 교육 후 평가와 자격부여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35조 및 제48조		
2. 아래 특별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공정 이상상태 발생시 조치방법 나. 설계, 설비 및 운전절차 등의 변경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35조 및 제48조		

IV-6. 변경요소관리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변경관리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7조 및 제50조		
2. 다음 각 목 내용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부서간의 업무범위 및 절차 나.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변경판정의 구분표 라. 변경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마. 변경전의 공정위험성평가 바.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교육 사. 변경에 따른 수정 또는 개정 절차 아. 변경사항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37조 및 제50조		

IV-7. 자체감사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자체감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8조 및 제51조		
2. 다음 각 호 사항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감사 주기 나. 감사팀의 구성 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항목 작성방법 라. 감사방법(서류, 현장 및 면담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사결과에의 평가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바. 감사결과를 경영방침에 반영여부 사. 감사보고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38조 및 제51조		

IV-8. 가동전 안전점검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절차를 규정화 하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6조 및 제49조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2. 가동전 안전점검 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의 적정 여부 나.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에 적합하며 규정된 검사에 합격 여부 다.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기준 또는 명세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라. 안전운전절차,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마.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의 시행과 평가시 제시된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바.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여부 사.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 사항 아. 가동전 점검표의 작성 및 결과처리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36조 및 제49조		

IV-9. 공정사고 조사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공정사고 조사에 관한 절차서를 규정화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9조 및 제52조		
2. 공정사고조사지침에 다음 사항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공정사고의 범위 나.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다.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라.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의 보존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39조 및 제52조		
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의 포함 여부 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 나. 사고발생 개요와 사고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	고용노동부고시 제39조 및 제52조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4.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 운전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9조 및 제52조		
5.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고시 제39조 및 제52조		

V. 비상조치계획

심 사 항 목	관련조항	심사결과	비고
1. 비상조치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 내용의 포함 및 적정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근로자 대피계획 라. 대피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마.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바.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사. 내·외부와 의 통신체계 및 방법 아. 비상조치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자. 사고발생시 및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차. 주민홍보계획 카.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타.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하.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시행규칙 제5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40조 및 제53조		
2. 사업장에서는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 경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규칙 제5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40조 및 제53조		
3.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시행규칙 제5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40조 및 제53조		

<개정 2014.11.10., 2017.3.21., 2020.06.26.>

작성일 :

[illegible]

1. 위 양식은 엑셀 파일로 작성
2. 매 분기별 누계 현황을 작성
3. 비고란에 “기존”, “이전”, “변경”, 신규설비 경우 “설치과정”, “시운전”을 표기

[별지 제8호서식]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 대장

<개정 2014.11.10., 2017.3.21., 2020.06.26.>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 대장

()화학사고예방센터

작성일 :

구분		심사결과						확인결과				
		계	접수	심사 완료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계	적합	조치요청		확인 면제 여부
										조건부 적 합	부적합	
계												
1/4 분기	소계											
	1월											
	2월											
	3월											
2/4 분기	소계											
	4월											
	5월											
	6월											
3/4 분기	소계											
	7월											
	8월											
	9월											
4/4 분기	소계											
	10월											
	11월											
	12월											

<개정 2014.11.10., 2017.3.21., 2020.06.26.>

작성일 :

[illegible]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수입현황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년 월 일

○ 받 음 :

○ 발송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일련 번호	사 업 장 명	입 금 일 자	건수	입 금 액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심사수수료정산서<개정 2007.1.5., 2020.06.26.>

심 사 수 수 료 정 산 서		
납부 의무자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정 산 결 과		
자진납부액	정 산 액	과오납액
정 산 액 산 출 근 거		
심 사 대 상	규 모	수 수 료
합 계		
과오납액 송금계좌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위와 같이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유선,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 당 : 화학사고예방센터(○○)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소재지 : 〇〇 〇〇시 〇〇면 〇〇로 〇〇 〇〇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〇층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편·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이의제기 안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 ▶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지연, 설명요구 거절
- ▶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〇〇지역본부/지사 **본부장/지사장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또는
화학사고예방센터(○○) 〇장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〇〇지역본부장/지사장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 업무명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확인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방으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 의무 주요 내용

1. 심사 안건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해당 심사를 회피한다.
2. 업무 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고, 업무 관련자에게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과 같은 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3.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4. 심사 시 알게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 업무 수행 당사자

○ 심사대상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공사(시설)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내부 심사원 (소속기관 :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외부 심사위원

직책 : 성명 : (서명)